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최종익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96호

나. 제 출 자 : 이홍민 의원 외 9명

다. 제출일자 : 2019년 7월 15일

라. 회부일자 : 2019년 7월 18일

3. 제안이유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효, 효행, 부모, 경로, 효문화 등 용어를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효행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효행 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효의 달 지정을 규정(안 제6조)

마. 효행자 표창 및 격려금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향후 결정

다. 입법예고 : 2019. 7. 15. ~ 2019. 7. 19.(의견제출 없음)

6. 검토보고

가. 제안경위 및 제정취지

○ 동 조례안은 2019년 7월 15일 이홍민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96호로 2019년 7월 18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임.

○ 제정취지는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각종 효행 사업의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검토의견

(1)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

○ 통계청 발표[1]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접수 건수가 2014년 3,532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8년 5,188건으로 2014년 대비 1,656건 31.9% 증가하고 노인학대로 인한 상담 건수 또한 동일 대비 시 30,283건 29.6% 증가하여 노인 학대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연도별 노인 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 건수(2019.7.10.전국 기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학대사례 신고접수 건수	3,532	3,818	4,280	4,622	5,188
학대상담 횟수	71,889	78,368	82,468	88,919	102,172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1) 국가통계포털 노인학대 연도별 신고접수 및 상담횟수(http://kosis.kr/index/index.do)

○ 국회에서는 이미 2007.8.3.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효행장려법)을 제정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가 2010.1.7.「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진구 등 22개 구를 비롯해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총 129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따라서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2) 조례조문 주요내용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으로는 구청장에게 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효행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 운영하여 효행우수자에 대해 표창하고, 만 100세 이상 노인의 부양자에게 효행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의 효행교육과 제4조의 효행 사업 지원, 제6조의 효의 달 지정 그리고 제7조의 효행자 표창 및 제8조의 효행 지원 등의 주요 조문은 상위법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바, 전체적 조례 체계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만 100세 이상 노인의 부양자에게 효행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대상자 격려 시 현금 또는 물품과 1인 지급의 상당액 범위, 그리고 만 100세 도래 시 1회 지급 아니면 100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급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2〉 **자치구 효행장려금 매년 지급 현황**(2019.7월. 조례 기준)

구 분	계	20만원 이내	20만원	비고
지급 자치구 수	7개구	4개구 (종로,양천,영등포,송파구)	3개구 (서대문,은평,강동구)	미지급 15개구 ※조례제정: 22개구

〈표 3〉 **마포구 만 100세 이상 노인 현황**(2019.6.30.기준)

총	100세	101~104세	105~109세	110세이상	비고
314명	38명	90명	89명	97명	314명 [남 74, 24%, 여 240, 76%]

〈표 4〉 **마포구 만 99세~95세 노인 현황**(2019.6.30.기준)

총	99세	98세	97세	96세	95세
350명	30명	63명	56명	108명	93명

(출처: 마포구 행정포털)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6. 2. 3.>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 1. 13.]